

고결방지제로 Cellulose 및 Microcrystalline cellulose 사용 기준 제정(추가)

참조번호: [NOM/ADM-0180]

개정내용

허용되는 식품 효소제 목록의 수정

번호	첨가물	허가된 식품유형	최대 허용량
C.5	Cellulose (셀룰로스)	큐브화, 깎둑썰기, 갈거나 세절된 식물성 모조 치즈 제품	단독 또는 microcrystalline cellulose와 함께 사용할 경우 총 첨가량이 2.0%를 초과하지 않아야함.
M.5	Microcrystalline cellulose (결정셀룰로스)	큐브화, 깎둑썰기, 갈거나 세절된 식물성 모조 치즈 제품	단독 또는 cellulose와 함께 사용할 경우 총 첨가량이 2.0%을 초과하지 않아야함.

시행일 : 2022. 03. 01